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55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781,200원, 지방교육세 9902,120원, 농어촌특별세 413,060원 합계 11,096,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가. 원고는 2011. 9.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9. 29. 자산보유자로부터 [redacted]시 A건물 216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727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해 5. 2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3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781,200원, 지방교육세 9902,120원, 농어촌특별세 413,060원 합계 11,096,3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세 및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과세예고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사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에 대한 각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413,060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법률인 '농어촌특별세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3. 5. 9. 원고에게 취득세 등 본세와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율,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일자 등을 기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뒷면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제1조 ~ 제154조'가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구제방법 등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도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은 단순히 납세고지서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서 그 규정에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의한 부과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목적세로서 그 성질상 같은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본세에 부가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통상 본세인 취득세와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만을 대상으로 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위 지방세 세액 산출내역 중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원고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어떤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지 근거법률인 '농어촌특별세법'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